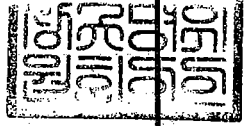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성 명	한 글	이 봉 로	일본명	
	한 자	李 鳳 魯	이 명	
출 생 연월일	1872년 6월 16일		사 망 연월일	1922년 8월 3일
본 적	漢城 南部 履洞 66統 10戶(1910년 주소)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872.6.16	출생 (全義李氏族譜 제15권 淸江公派 중편, 64쪽)		
	1895.4.1	軍部 주사(관입관6등)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38쪽)		
	1896.7.15	내각 기록국장(주입관5등) (같은 자료)		
	1896.9.24	중추원 의관(주입관5등) (같은 자료)		
	1903.8.29	비서원승(주입관6등) (같은 자료)		
	1903.11.14	시중원 시중(주입관6등) (같은 자료)		
	1904년 ~ 1945년			
	1906.7.8	궁내부 협판(칙임관2등)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38쪽)		
	1906.11.13	奉常司 제조(칙임관2등) (같은 자료)		
1908.	대동학회 회원 (대동학회월보 제1호, 1908년 2월 25일)			
1910.8.8	중추원 부찬의 (주입관1등)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76쪽)			
1910.10.1~1921.4.27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1912.8.1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같은 자료, 1913년 5월 31일)			
1922.8.3	사망 (全義李氏族譜 제15권 淸江公派 중편, 64쪽)			



조 사 내 용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9호(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재직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7일; 『매일신보』, 1910년 10월 6일 8면, 「사령」.
1910년 10월 1일 이봉로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함.

▶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5월 3일.
1921년 4월 27일 관제개정에 따라 폐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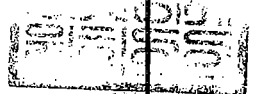
【참고사항①】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 출전: 『조선총독부관보』, 1913년 5월 31일(부록).

1912년 8월 1일 <明治45년 칙령 제56호>에 의해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음.

【참고사항②】 친일적 성향의 사회단체인 대동학회 회원을 역임함.

- 출전: 「本會任員錄」, 『대동학회월보』 제1호, 1908년 2월 25일.



관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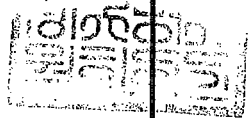
이봉로는 20대 초반인 1895년에 군부(軍部) 주사, 이듬해 내각 기록국장 등을 지냈고, 1900년대 이후로는 주로 궁내부에서 관리생활을 지속한 인물이다. 1908년에는 일제의 유림계 회유책에 부응하여 조직된 유림단체인 대동학회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한일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1일 부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어 10년 넘게 재직하다가, 1921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제개정 시에 참의로 임명되지 못하였다.

또한 1912년 8월 1일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그가 한일합병 직후부터 10년 넘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봉로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